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교육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20조 제1항 제7호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연관된 안건으로
-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50% 감면해 주어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7.]